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0-2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예산 범위에서 지원,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지원 가능

다. 환수 및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4,165,9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긴급히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긴급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지원

나. 관련 조문

1) 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지원액 \ 연도	2020년
군비	4,165,900

3. 관련 의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함으로써 가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도)

1. 1인~2인 가구 : 9,060가구 × 300천원 = 2,718,000천원
2. 3인~4인 가구 : 2,656가구 × 400천원 = 1,062,400천원
3. 5인 이상 가구 : 771가구 × 500천원 = 385,500천원
4. 총 4,165,900천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김 근 호